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

- 건물 -

고유번호 1103-2006-009152



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외 1필지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 및 건물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5-37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	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6.82㎡ 2층 121.38㎡ 지층 55.44㎡	도로명주소 2012년6월28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06년10월16일 제58002호		소유자 최금석 410310-*****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(평창동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6	근저당권설정	2011년11월25일 제51490호	2011년11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960,000,000원 채무자 최금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(평창동)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114736-0000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7-95 (연회지점)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5-37
8	근저당권설정	2012년12월14일 제64116호	2012년12월14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20,000,000원 채무자 최금석

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외 1필지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(평창동)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114736-0000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7-95 (연회지점)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5-37
9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25일 제56151호	2013년11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84,000,000원 채무자 최금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(평창동)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114736-0000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7-95 (연회지점)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5-37

-- 이 하 여 백 --

열 램 용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3-2006-009152

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5-136외 1필지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최금석 (소유자)	410310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33(평창동)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근저당권설정	2011년11월25일 제51490호	채권최고액 금96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	최금석
8	근저당권설정	2012년12월14일 제64116호	채권최고액 금12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	최금석
9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25일 제56151호	채권최고액 금84,000,000원 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	최금석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